

대통령령 제 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면서 동법 제2조제9호의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천연가스 물량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 ①법 제19조제1항에서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’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(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(중략) 포함한다) 2.~9. (생략) < 신설 >	< 좌 동 > 10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면서 동법 제2조제9호의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.